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94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794호(2024. 3. 1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07.24.)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가. 입안취지 :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재청취

나. 열람기간 : 2024. 8. 9. ~ 22.(공고일 다음일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02-2133-8253)
-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2995), 미래공간개발과(☎02-2147-2159)
- 온라인제출(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제출(열람공고)→주민의견서 작성)

라. 열람내용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국제교류복합지구 (교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1,663,652	증)110,827.0	1,774,479.0	서고 제1994-189호 (1994. 6. 7)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국제교류복합지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면적 : 1,663,652㎡ → 1,774,479.0㎡ 증) 110,827.0㎡	○ 상위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구상한 잠실스포르츠·MICE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도서 비치)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도서 비치)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도서 비치)

2) 잠실스포르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⑥	잠실스포르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잠실동 10번지 일원	-	증) 449,596.5	449,596.5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⑥	잠실스포르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신설 - A = 449,596.5㎡	○ 상위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구상한 잠실스포르츠·MICE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신설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도서 비치)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도서 비치)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열람장소 도서 비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 및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
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28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상위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한 범위 및 동 규칙 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칙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 현재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있음
- 나. 상위근거 법령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 다. 그 외 동 규칙의 상위법규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인용 조문 등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안 제명)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규칙 수정(안 제1조)
 -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수정
-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규칙에 반영(안 2조)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수정(안 제2조제2호 수정)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로 수정

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2조 제3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정의 수정(안 제2조제3호 수정)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를 삭제

－ 제3조제1항 중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을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대안교육기관” 을 “대안교육기관 등” 으로 수정

마. 명칭 및 조항 현행화

－ “위탁기관” 을 “위탁교육기관” 로 수정(안 제3조제3항 수정)

－ 단순 누락 “②제31” 을 “②제31조” 로 수정(안 제5조제②항 수정)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을 “공통교육과정” 으로 수정하고, 내용의 연관성을 볼 때 제7조제②항 으로 이동(안 제6조제②항 수정 및 이동)

－ 제6조제③항 삭제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용어의 정의 등에 따라 “원적교” 를 “제적교” 로 수정(안 제8조제①항 수정)

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실제로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없어짐에 따라 제9조제④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399-9525, FAX 02-6973-9939

○ 이메일: cardioid97@sen.go.kr

4. 붙임 1. 입법안

2. 의견제출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 제2024-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위탁교육”을 “위탁교육”으로 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을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관지정”을 “위탁교육기관지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1”을 “제31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공통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원적교”를 “제적교”로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의 <u>지원</u>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의 <u>지정</u>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 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서울특별 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 관 지원 조례」에 따라 정상적 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 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 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 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생략) 2. “대안교육기관”이란 정규교 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	제 2 조 (정 의) ----- -----. 1. (현행과 같음)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

인 교육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생 략)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를

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

----- 위탁교육 -----

-----.

4. (현행과 같음)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

-----.

② 대안교육기관 등 -----

-----.

③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④·⑤ (생략)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31에 따라 퇴
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기관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교육대
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
본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
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
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

----- 위탁교육기관지
정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1조

-----.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
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
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위탁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학
교의 장이 정한다.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생 략)

<신 설>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장은 위
탁교육기간에 대하여 학교수업
으로 인정하며 위탁교육대상자
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
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한
다.

②·③ (생 략)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
원) ① 삭 제

②·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
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감의 승인을 얻어 공통 교육과
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다.

제8조(학사관리)

①

-----재적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
원)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식)

성 명: (인)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4년 월 일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28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금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조례 제2조의2)
 - ‘2025년 12월 31일’ 에서 ‘2027년 12월 31일’ 로 연장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청사이전추진단)

☐ 주소: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 연락처: 전화 02-2282-8502

☐ 이메일: psalm57@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공지-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1. 입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5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7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자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년 월 일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4-5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호(1976.4.7.)로 최초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14호(2023.9.21.)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02호(2024.4.18.)로 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83호(2024.5.2.)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52)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8월 8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 2) 명 칭 : 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후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 5,576.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 열람장소 : 중구청 4층 공원녹지과(☎02-3396-58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의 명칭 : 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39-3	공	529.5	529.5	529.5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2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33-3	공	98.3	98.3	98.3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3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35-1	도	94.6	94.6	94.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4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1-3	공	92.3	92.3	92.3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새중대로 110					
5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1-10	대	97.9	97.9	97.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6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46	공	488.9	488.9	488.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7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1-29	공	32.2	32.2	32.2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새중대로 110					
8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103-6	공	35.1	35.1	35.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9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193	공	388.9	388.9	388.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10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194	공	41	41	4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11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33-5	공	658.6	658.6	658.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12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70-4	공	297.1	297.1	253.1	44.0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13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39-4	공	145.6	145.6	145.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입건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4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97-9	도	39.1	39.1	39.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로 17					
15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33-4	공	59.2	59.2	59.2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로 17					
16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6-2	공	70.4	70.4	70.4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로 17					
17	-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172-3	도	1,268	55.4	20.4	35.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8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0	대	162.6	162.6	30.9	131.7	길*전	서울시 **구 *****					
19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45-6	대	317.5	317.5	317.5	-	대**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대동 39					
20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47	대	92.6	92.6	20.7	71.9	김*호	경북 **군 **면 **길 **-* **	1/6				
								김*현	서울시 **구 *****길, ****	1/6				
								김*	경북 **시 **길 **	1/6				
								김*정	서울시 **구 **로 **, **	1/6				
								손*자	충북 **군 **면 *****길 **	1/6				
								손*현	충북 **군 **면 **길 **-* **	1/6				
21	사용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1-9	대	62.8	62.8	62.8	-	주식회사***** (수탁자) ※ 신탁자: *****주식회사 (기부채납 예정)	서울시 **구 **로 ** ※신탁자 주소 경기도 **시 **구 *****					토지사용 (무)정당 영

인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2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8-1	대	465.4	465.4	147	318.4	* * * 합영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영등포세무서 장		근저당	
23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2	대	4.3	4.3	4.3	-	국(기획재정부)			공로세무서장		근저당	
24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5	대	20.8	20.8	7.2	13.6	국(기획재정부)			주식회사키움 강남구 에스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 노원로 422	근저당	
25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8	대	40.7	40.7	40.7	-	국(기획재정부)						
26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7	대	3.3	3.3	3.3	-	국(기획재정부)						
27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19	대	4.3	4.3	4.3	-	국(기획재정부)						
28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16	대	2.6	2.6	2.6	-	국(기획재정부)						
29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2	도	340.7	93.3	-	93.3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0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6-1	도	321.4	321.4	-	321.4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1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6	도	334.5	328.5	-	328.5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입권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필지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32	사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3-8	대	222	171	-	171	주식회사***** (수탁자) ※ 신탁자: *****주식회사 (기부채납 예정)	서울시**구*****로** ※신탁자 주소 경기도**시**구*****					토지사용 (무상용 의)
33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5	도	131.9	131.9	-	131.9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로 17					
34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6	도	152.5	129.1	-	129.1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로 17					
합계					5,576.2	3,786.4	1,789.8							

※ 사업부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5번지는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6호, 2022.3.17.)」에 의거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1지구에서 의무부담 대상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의 명칭 : 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0	건물	철근콘크리트	1,089.81	길*전	서울시**구*****				
		건물	목조	181.82						
		건물	목조	33.06	대**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대동 39				
2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45-6	건물	세멘트	63.8						
					김*호	경북**군**면**길***				
					김*현	서울시**구*****길,***				
					김*	경북**시**길**				
					김*정	서울시**구**로***,***				
3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47	건물	목조	85.18	손*자	충북**군**면*****길**				
					손*현	충북**군**면**길***				
					***합명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영등포세무서장		근저당	
4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0-1	건물	철근콘크리트	2,326.73			중로세무서장		근저당	
5	서울특별시 중구 대동 51-25	건물	판넬	34.6	소유자 미상					영입수과 (무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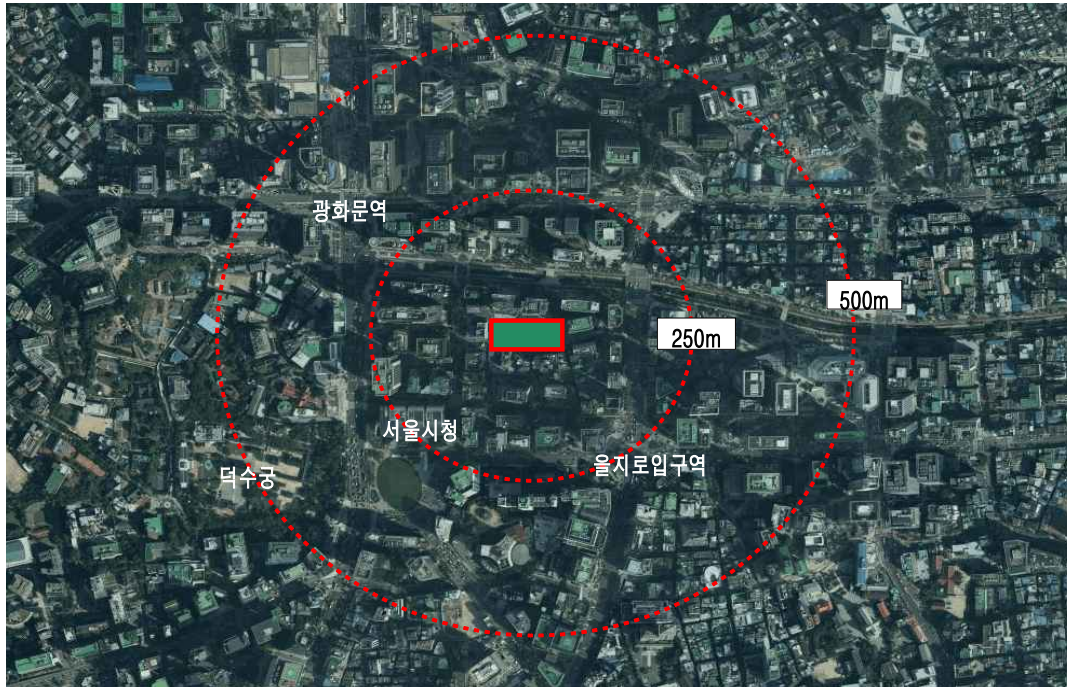
영업권 조서

- 사업의 명칭 : 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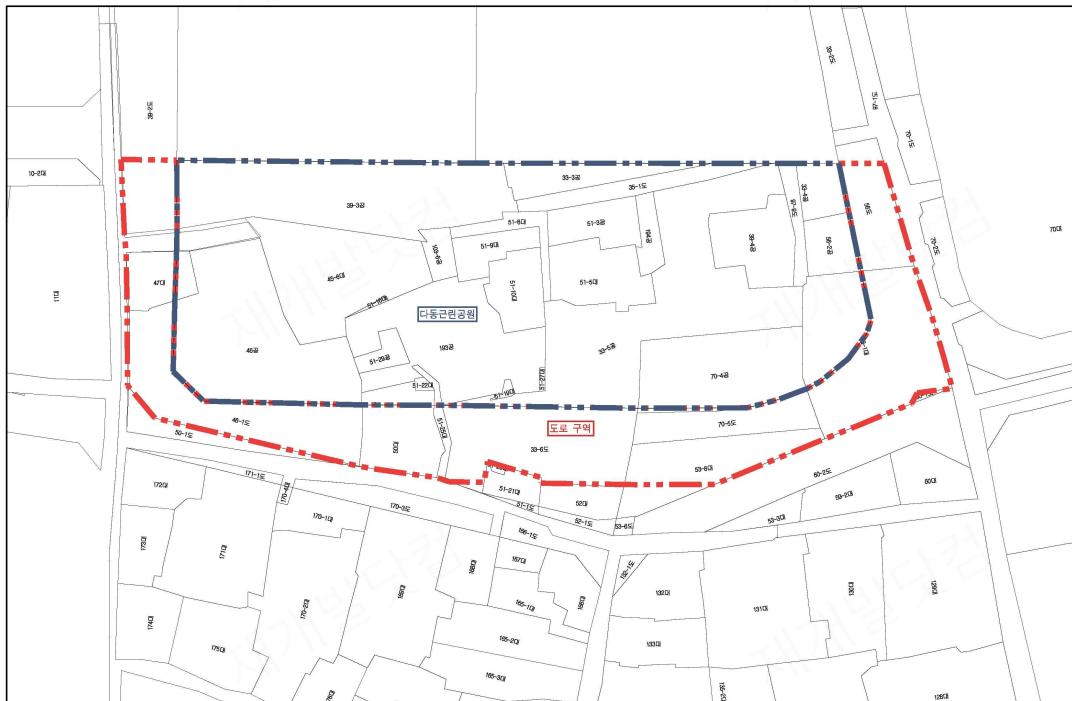
연번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호	수량	영업의 종류	영업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5-6	건물	순가명가 (1층)	1	음식업	손*길	좌동					
2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7	건물	동원감자탕 (1~2층)	1	음식업	신*숙	좌동					
3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0	건물 (한수빌딩)	킹카노래방 (지하)	1		김*수	좌동					
			황부자 (1층)	1	음식업	장*호	좌동					
			나주곰탕 (2층)	1	음식업	관*옥	좌동					
			한진오피스 (3층)	1		박*현	좌동					
			현대한양극 (3층)	1		소*영	좌동					
			법무사 박병문 사무소(3층)	1		박*만	좌동					
			쥬수남기업 (5층)	1	무역회사	김*주	좌동					
			나눔대부 (6층)	1		임*호	좌동					
			대림산업사 (7층)	1	건설업	강*태	좌동					

연 립 호 수 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분 종류	상호	수량	영업의 종류	영업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4	서울특별시 중구 디동 58-1	건물 (영업용임)	B★W 노래방 (지하)	1		홍*범	좌동				
			엘라스파이 (1층)	1		김*은	좌동				
			이저카야하루 (1층)	1	음식업	곽*은	좌동				
			마케팅 서울시청점(1층)	1	음식업	신*희	좌동				
			BAR the moon (2층)	1		최**시그니처	좌동				
			향연주방 (3층)	1	음식업	이*원	좌동				
			벤츠노래주점 (4층)	1		이*훈	좌동				
			zen 요가 (5층)	1		이*현	좌동				
			명동영우스 고시원(6~7층)	1	숙박업	정*덕	좌동				
			줄인스주사리 (1층)	1	카페	김*빈	좌동				

□ 위치도



□ 사업구역도



◆ 광진구고시 제2024-27호

광장동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4-13(2024.05.23.)호로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된 광장동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광진구청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휴식과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가) 광장동 공원(소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8-24 일원

나) 광장동 공원(어린이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8번지

3. 면 적

가) 광장동 공원(소공원): 677㎡

나) 광장동 공원(어린이공원): 2,026㎡

4.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및 도면: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3)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최초) 조서

가. 총괄표(위치 : 광진구 광장동 248-24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677	134				8	
기반시설	소계	26	26				5	
	광장	26	26				5	
조경시설		-	-					
휴양시설		-	-					
유흥시설		108	108				3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녹지 및 기타		543						
시설율		(134÷677)×100=19.79% (법정 20%이하)						
건폐율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77	134					8	
기반 시설	소계			26	26					5	
	진입광장	가		26	26					5	
유희 시설	소계			108	108					3	
	어린이놀이터	나		108	108					3	
녹지 및 기타	소계			543							
	녹지			543							



SCALE=1/200

도시계획시설

구분	시·도	부·군	표시면적(㎡)	소유면적(㎡)	종목(종)	비고
합	전	전	677	134	0	
기타시·도	전	전	26	26	0	
유류시설	전	전	26	26	0	
유류시설	전	전	106	106	3	
유류시설	전	전	115	115	3	
유류시설	전	전	108	108	3	
유류시설	전	전	643	643		

Scale : 1/200(A1)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최초) 조서

가. 총괄표(위치 : 광진구 광장동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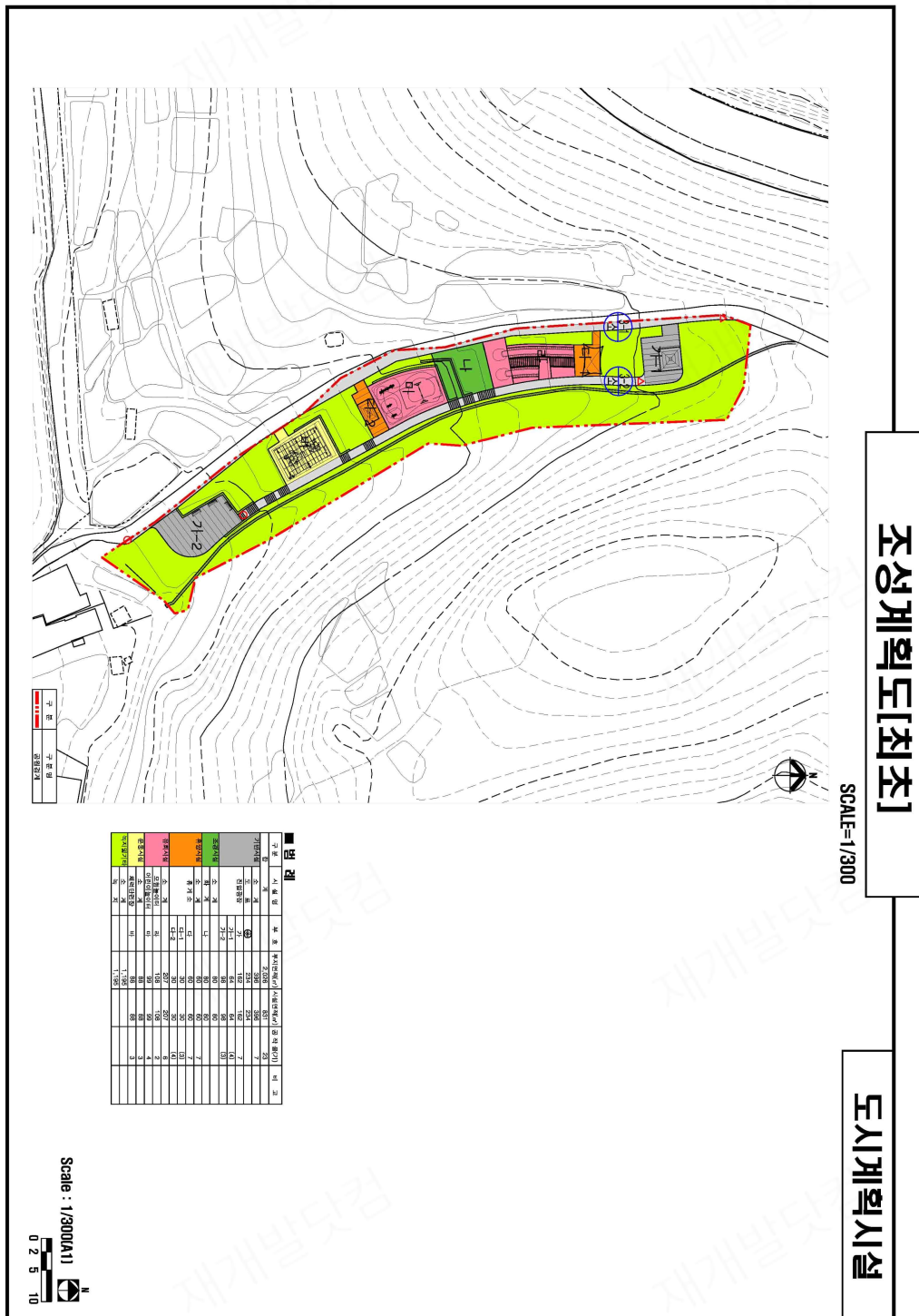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2,026	831				23	
기반시설	소계	396	396				7	
	도로	234	234					
	광장	162	162				7	
조경시설		80	80					
휴양시설		60	60				7	
유흥시설		207	207				6	
운동시설		88	88				3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녹지 및 기타		1,195	-					
시설율		(831÷2,026)×100=41.01% (법정 60%이하)						
건폐율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026	831					23	
기 반 시 설	소계			396	396					7	
	도로			234	234						
	진입광장	가		162	162					7	
		가-1		64	64					(4)	
		가-2		98	98					(3)	
조경 시 설	소계			80	80						
	화계	나		80	80						
휴 양 시 설	소계			60	60					7	
	휴게소	다		60	60					7	
		다-1		30	30					(3)	
		다-2		30	30					(4)	
유희 시 설	소계			207	207					6	
	모험놀이터	라		108	108					2	
	어린이놀이터	마		99	99					4	
운 동 시 설	소계			88	88					3	
	체력단련장	바		88	88					3	
녹지 및 기타	소계			1,195							
	녹지			1,195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최초	합계				199	234				
최초	소로	소계			199	234				
신설		3	1	0.5~2.0	120	115	산책로	진입광장 (가-2)	진입광장 (가-1)	
신설		3	2	1.5	79	119	산책로	진입광장 (가-2)	진입광장 (가-1)	



◆ 영등포구고시 제2024-98호

**도시관리계획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I-3구역 실효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호(2012. 1. 26.)로 결정(재정비)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0호(2019. 8. 1.)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구 442-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I-3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실효하고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실효일자 : 2024. 8. 2.(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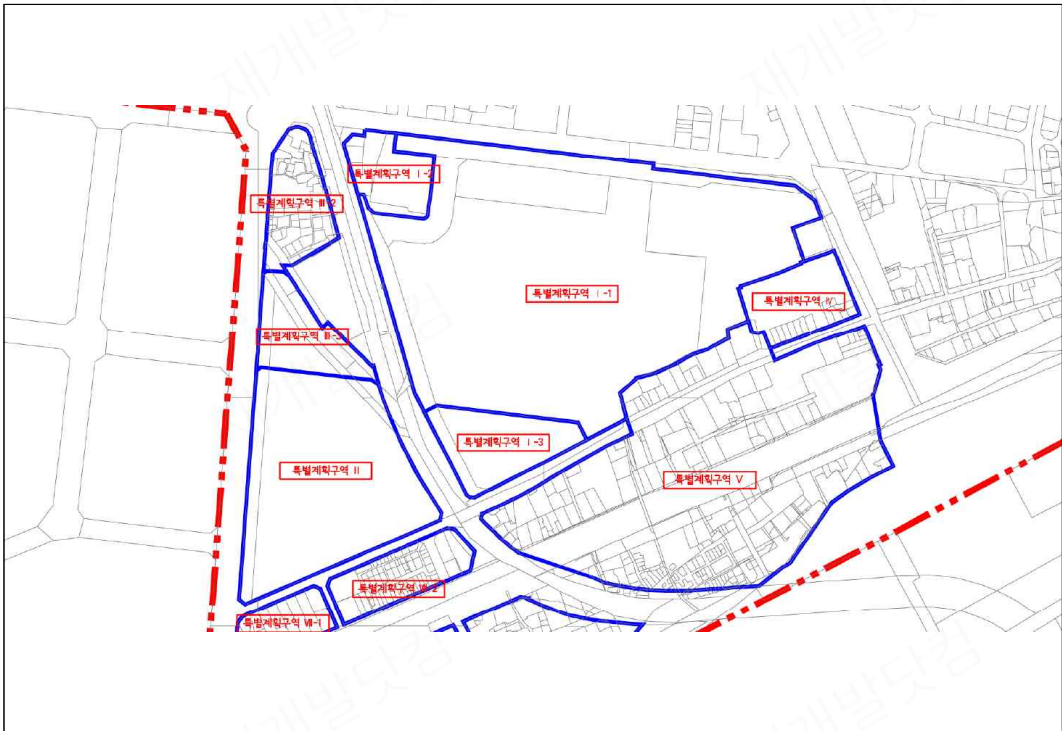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다.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0호(2019. 8. 1.)로 결정(변경)된 영등포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I-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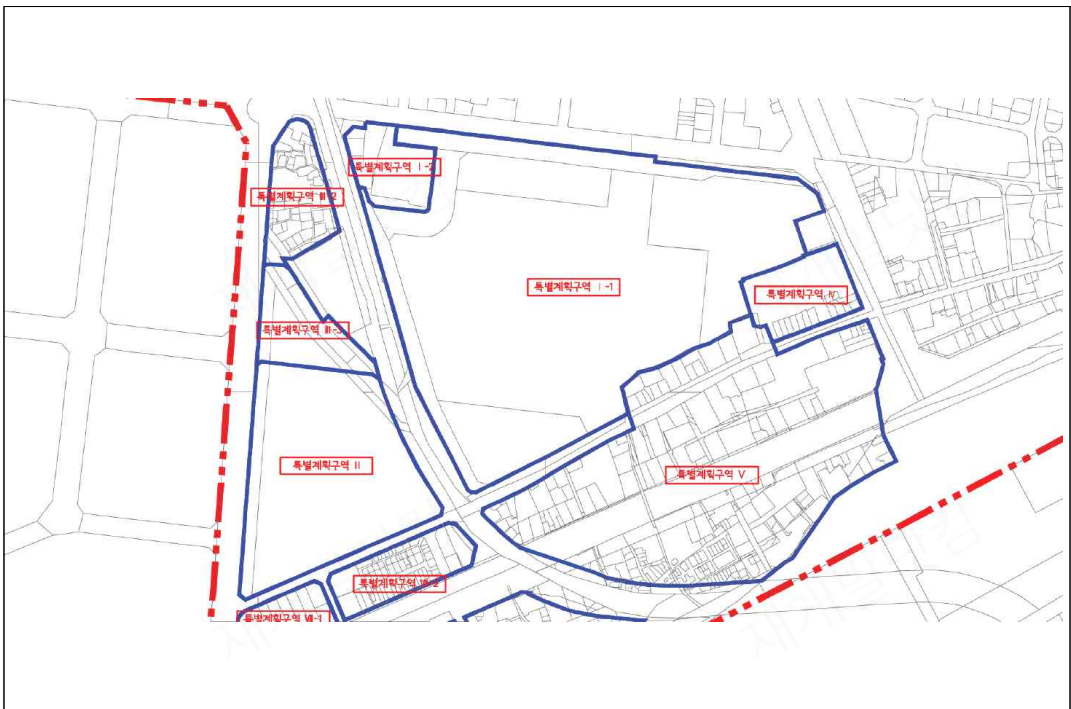
라. 관련도면 : 붙임 참조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기정)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변경)



◆ 강동구고시 제2024-1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1994-47호(1994. 10. 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 12. 31.)로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1-224호(2021.10.28.)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고시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24-1439호(2024. 7. 11.)로 열람공고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련서류(계재 생략)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88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8월 8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동구 천호동 551-7호 ~ 천호동 541-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천호동 551-7호 ~ 천호동 541-2호간 도로확장 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기정) 도로개설 폭 6~15m, 연장 93m
- (변경) 도로개설 폭 6~15m, 연장 93m(면적 6㎡감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기정) 강동구 구청장 이정훈(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 (변경) 강동구 구청장 이수희(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마. 사업의 시설 개요(변경): 수량 변경(관련서류 참고)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4.12.31.까지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8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관악구공고 제2024-1572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8월 8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계약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6-1, 산6-9

나. 계약면적 : 40,458㎡

다.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 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24)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악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6-1	임야	3,48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6-9	임야	36,975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2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부지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본조 삭제).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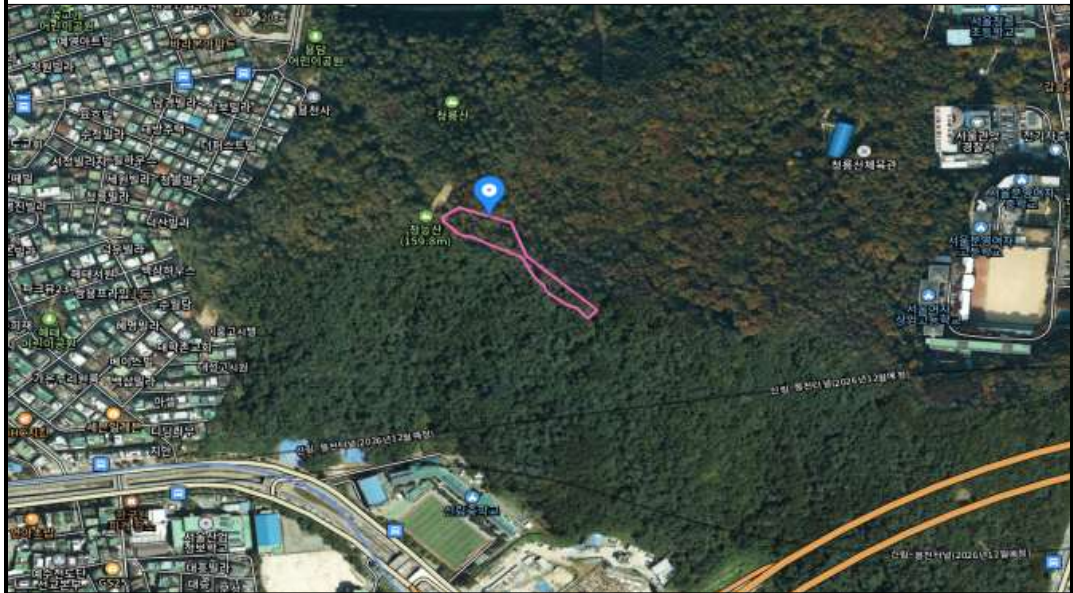
○○○○년 ○○월 ○○일

성명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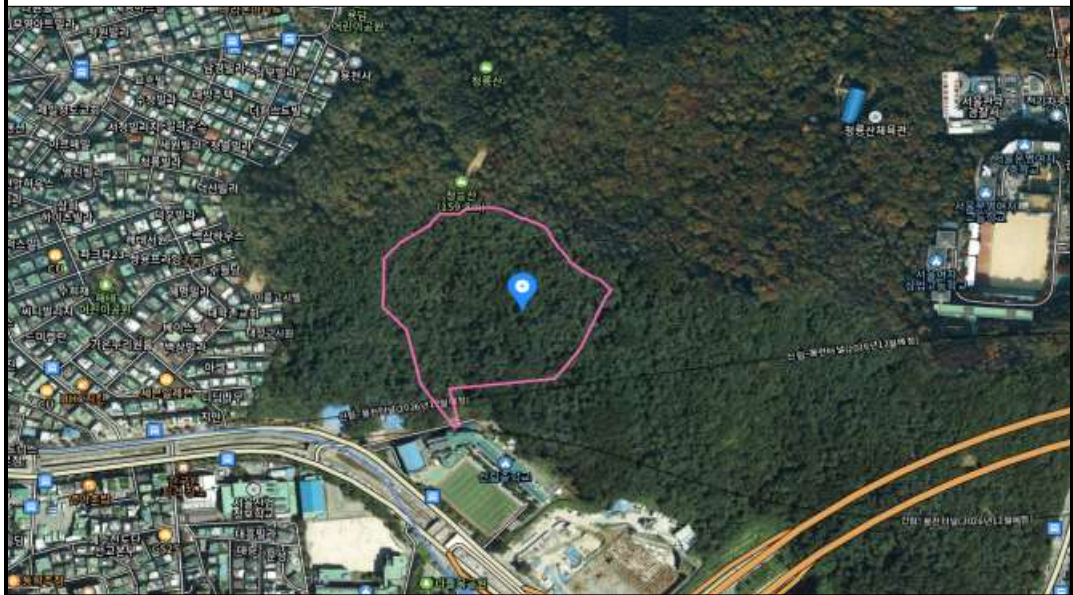
관악구청장 (인)

□ 위치도

위치도 : 신림동 산6-1



위치도 : 신림동 산6-9



◆ 서초구공고 제2024-1709호

도시관리계획(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365호(2022.08.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방배동 452-1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당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452-1일원	5,140.9	-	5,140.9	-
변경	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명칭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도시기반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방배2동 주민센터(☎02-2155-7797)

4. 관련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같음)

5. 기타사항: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02-2155-6819, 이메일 sb0038@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 윈드서핑 연맹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326 (자양동)	잠실대교~영동대교	전동포일 2	수상레저사업	2024.8.3.~ 2024.10.31.	2024. 8.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글로벌중공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3-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81㎡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 공사관리용 가설사무실 운영	2024.8.1. ~ 2024.12.21.	2024. 7.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재성종합건설(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2 D동 321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135㎡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 공사관리용 가설사무실 운영	2024.8.1. ~ 2024.12.31.	2024. 7.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다인이앤디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대영골드벨리 804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7	27㎡	"도림천 일대 대섬도구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2024.7.31. ~ 2024.8.15.	2024. 7.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이용증진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7-7, 624, 168-2, 619-2 중 일부	3,200㎡	수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공사에 따른 적재	2024.7.30. ~ 2024.12.31.	2024. 7.3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썬굿윌마리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길10 11층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4-20	1,250㎡	독점 유선장 2개소 대체건조	2024.1.1. ~ 2024.12.31.	2024. 8.1.
주식회사 더스텔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5길48 5층		1,25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장 (자연성회복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50	3,500㎡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사무실(2동, 3m*6m, 3m*6m) 및 사석 임시적재	2024.8.1. ~ 2024.12.31.	2024. 7.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청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잠실대교 하부 둔치부 (남, 북단)	1,000㎡ (각 500㎡)	잠실대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임시 점용	2024.08.05. ~ 2024.08.31. 중 2일	2024. 08.02.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10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71-23번지
 - 면 적 : 5,848.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물놀이장 설치에 따른 공작물 설치
 - 개 요 : 물놀이장 1식(A=913㎡), 화강석 포장 1식(A=4,411㎡), 분수시설 13개소, 샤워시설 6개소, 쉼터시설 14개소, 음수대 1개소, 기타 시설 1식(관목, 전기, 웬스, 우·오수 처리 등)
5. 점용기간 : (당초) 2019.04.11. ~ 2024.06.30.
(변경) 2024.07.01. ~ 2029.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1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21-8번지
 - 면 적 : 1,4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체육시설(족구장) 조성
 - 개 요 : 족구장 2면, 집수정 설치, 조명탑 설치, 그물망 펜스 설치
5. 점용기간 : (당초) 2019.06.19. ~ 2024.06.18.
(변경) 2024.06.19. ~ 2029.06.18.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1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2-71번지
 - 면 적 : 1,4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체육시설(풋살경기장) 조성 및 농구장 정비
 - 개 요 : 풋살경기장 조성(40×20m), 농구장 개보수(32×20m)
5. 점용기간 : (당초) 2019.06.19. ~ 2024.06.18.
(변경) 2024.06.19. ~ 2029.06.18.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35
 - 면 적 : 71.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그늘막(에어파빌리온) 설치
5. 점용기간 : 2024.7.31.~2029.7.30.(5년)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체육진흥과)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42-71, 621-8, 621-9, 신정동 871-24, 871-23,
871-10, 신도림동 285-22, 271-64, 고척동 276-3
- 면 적 : 38,25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구로구 체육시설 양성화
- 내 역 : 구일역하부 인라인스케이트장, 구일역 게이트볼장, 어린이야구연습장, 배구장, 축구장 A, 축구장B, 안양천 족구장B, 족구장C, 족구장D, 다목적광장, 소규모 체육시설, 오금교하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조잔디축구장, 농구장(C구장)

5. 점용기간 : 2024.08.05. ~ 2029.08.0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1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구청(치수과)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0-2
 - 면 적 : 일시 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금천구 하안교 안전진단 지반조사
 - 내 역 : 지반조사 1공
5. 점용기간 : 2024.08.06. ~ 2024.09.05. 중 2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